

의안번호	제 32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6월 8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27
----------	-----

제안연월일 : 2023년 6월 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기존 표결방법의 미비점 보완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의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거수, 투표용지 등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칙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거수, 투표용지, 이의 유무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3. 규칙안 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거수, 투표용지, 이의 유무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p> <p>② 삭 제</p> <p>③·④ (생 략)</p>	<p>제39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거수, 투표용지, 이의 유무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의의회 기본 조례】

제39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2.3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법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법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5. 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법 제32조, 법 제120조 또는 법 제121조, 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